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구단105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3. 22.
판 결 선 고	2016.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115,7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711,5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시 [redacted]구 B빌딩(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1. 6. 15. 피고로부터 대수선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엘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베이터 설치 및 외부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한 후 2011. 12. 2.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 30. 이 사건 건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공사비내역을 제출하거나 취득(신고)가액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208,532,8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170,650원, 농특세 417,060원 합계 4,587,71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9.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견적서 및 공사내역을 제출받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총비용 508,000,000원에서 외부 주차장 보수공사와 관련한 42,654,641원을 차감한 나머지 465,345,359원이 개수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그 중 256,812,526원(465,345,359원-208,532,833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14. 원고에게 누락된 256,812,526원에 대한 취득세 7,115,7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711,56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단순 보수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7.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총비용 중 개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은 별지1 공사비내역 표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1) 가산세 관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 피고의 안내를 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고의로 취득(신고)가액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누락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개수비용 관련 주장

(가)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는 빗물누수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시공하여야 하는 단순 보수공사로서 그 비용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개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창호공사는 구조변경 없이 기존 창틀 틈새로 들어오는 빗물누수 때문에 수시로 행하던 실리콘 보수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어 부득이 외벽공사와 병행하여 한 단순 보수공사로서 그 비용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개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수장공사 및 도장공사는 깨진 계단바닥, 부서진 핸드레일(손잡이), 계단벽체를 보수한 것으로써 계단을 해체하여 새로이 시공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공사가 아닌 단순 보수공사이므로 그 비용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개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고가수조는 새로이 신설한 것이 아닌 누수가 심한 기존의 낡은 수조를 교체한 것이고, 목욕탕 입상배관은 누수가 잦은 기존 배관을 교체한 것으로 단순 보수공사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개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0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바,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지방세법령을 오해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취득세를 일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신고·납부시 피고로부터 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수비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관련 주장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을 이동설치한 후 그곳에 방화용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고, 외벽을 조적에서 석재로 변경하며, 1층부터 4층까지 세로로 만든 원형유리창의 돌출공간을 네모형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바, 방화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공사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호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어 대수선으로서 개수에 포함되는 점, ② 옥상 우레탄 방수는 방화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지층부터 옥탑까지의 내력벽, 바닥, 지붕틀 등을 해체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공사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관련 공사비용은 개수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창호공사 관련 주장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미관지구 내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을 조적에서 석재로 변경하고 건물 중앙부 계단실 부분에 1층부터 4층까지 이어지는 반원형 돌출유리창을 사각형 평면유리창으로 바꾸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호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어 대수선으로서 개수에 포함되는 점, ② 창호공사 및 관련 철거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공사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창호공사 관련 공사비용은 개수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수장공사 및 도장공사 관련 주장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호는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단을 해체하여 새로이 시공하거나 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깨진 계단바닥, 부서진 핸드레일(손잡이), 계단벽체를 보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 대수선의 범위 포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단과 관련한 철거, 도장, 석공사 등 관련 공사비용은 모두 개수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고가수조, 목욕탕 입상배관 관련 부분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제6조 제2호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며, 제4호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저장시설로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을, 제5호는 급수·배수시설로 송유관,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교체한 고가수조, 목욕탕 입상배관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5호가 규정한 저장시설,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고가수조, 목욕탕 입상배관 관련 공사비용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판사 소병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별지1

공사비 세부 내역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공사금액	과표제외 (원고)	과표제외 (피고)
Ⅰ. 건축공사						
1. 공통가설공사						
폐기물 처리비	지정 폐기물	TON	1	450,000		
폐기물 처리비	일반	M3	75	2,625,000		
현장 정리 인부		인	30	2,400,000		
[소 계]				**5,475,000**	**0**	**0**
2.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10	12,500,000		
옥상 바닥 무근콘크리트	엘리베이타 기계실	평	319	4,466,000		
외부주차장 무근콘크리트 타설		M2	425	4,675,000	4,675,000	4,675,000
외부 쌍줄 비계 설치해체		M2	1,608	12,381,600		
낙하물 방지망 설치	그물 + 합판	M2	250	1,425,000		
분진망 설치 및 해체		M2	1,608	2,572,800		
안전발판 설치 및 해체		매	520	2,860,000		
[소 계]				**40,880,400**	**4,675,000**	**4,675,000**
3. 방수 공사						
외부 주차장 도막방수	비노출	M2	425	7,862,500	7,862,500	7,862,500
외부 주차장 하드너	노출	M2	425	2,613,750	2,613,750	2,613,750
옥상 우레탄 방수	노출	M2	327	6,213,000	6,213,000	0
화장실 액체 방수 2차		M2	95	570,000		
[소 계]				**17,259,250**	**16,689,250**	**10,476,250**
4. 조적 및 타일 공사						
시멘트벽돌공사		장	30,000	9,000,000		
타일 공사	천정 공사 포함	개소	4	6,00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미장 공사		식	1	5,500,000		
쇠흙손 미장		M2	327	1,406,100		
화장실 칸막이		M	25	2,500,000		
[소 계]				**24,406,100**	**0**	**0**
5. 창호 공사						
알미늄 창호	4200*1500	개소	12	6,924,000	6,924,000	
	3900*1500	개소	18	9,652,500	9,652,500	
전면 PJ 창	900*500	개소	60	3,960,000	3,960,000	
	1500*1500	개소	32	6,390,400	6,390,400	
	900*900	개소	3	477,000	477,000	
후면 PJ창	750*500	개소	62	4,092,000	4,092,000	
방화문	900*2100	개소	23	4,554,000	4,554,000	
스텐레스틀	1500*2400	개소	6	5,850,000	5,850,000	
	3900*3000	개소	6	6,750,000	6,750,000	
	4200*3000	개소	2	2,362,000	2,362,000	
	8500*3000	개소	1	2,388,000	2,388,000	
	3000*3000	개소	1	960,000	960,000	
강화유리 도아		개소	21	3,570,000	3,570,000	
강화도아 손잡이		개소	21	756,000	756,000	
강화도아힌지		개소	21	1,428,000	1,428,000	
칼라 복층유리	16T	M2	256	12,108,800	12,108,800	
강화유리	8T	M2	98	3,871,000	3,871,000	
[소 계]				**76,093,700**	**76,093,700**	**0**
6. 수장 공사						
계단 핸드레일		M	57	4,275,000	4,275,000	
엘리베이타 공사		식	1	38,500,000		
간판 거치대 공사		개소	4	4,400,000		
전면 단열공사	은박지단열재	M2	987	7,402,5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소 계]				**54,577,500**	**4,275,000**	**0**
7. 도장공사 및 조경공사						
계단실벽체 빠데공사		M2	382	2,101,000	2,101,000	
계단실벽체 본타일공사		M2	382	2,674,000	2,674,000	
외부 드라이비트공사	스티로폴+메쉬	M2	735	22,417,500		
외부주차장 및 옥상 조경공사	주차장 블록 담장 포함	식	1	18,500,000	18,500,000	18,500,000
[소 계]				**45,692,500**	**23,275,000**	**18,500,000**
8. 석공사						
씨-블렉	30T	M2	264	36,960,000		
씨블렉 자바라	120*120T	M	119	9,893,600		
씨블렉 두겁석	50T	M2	54	8,850,600		
포천석	30T	M2	393	33,371,000		
포천석(습식)	30T	M2	25	1,625,000		
포천석	20T	M2	41	2,430,000		
포천석	오도리바20T	M2	81	4,860,000		
포천석	계단 30T	M2	63	3,780,000	3,780,000	
[소 계]				**101,770,200**	**3,780,000**	**0**
9. 철거공사						
전면 샷시 철거	유리 포함	개소	30	2,730,000	2,730,000	0
후면 샷시 철거		개소	32	576,000	576,000	0
방화문 철거		개소	23	460,000	460,000	0
계단핸드레일 철거		M	38	95,000	95,000	0
조적벽 철거	화장실 피트포함	개소	5	4,500,000		0
계단 바닥 석재 철거		M2	135	1,687,500	1,687,500	0
외부 간판 철거		식	1	5,200,000	5,200,000	0
엘리베이타 하부 철거	지하	식	1	3,800,000		0
외부 주차장 바닥		M2	534	2,937,000	2,937,000	2,937,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철거						
옥탑 계단실 철거		식	1	1,030,000	1,030,000	0
[소 계]				**23,015,500**	**14,715,500**	**2,937,000**
Ⅱ. 기계설비 배관공사						
1. 위생배관설치공사						
고가수조(F.R.P)	5*2.5*2	톤	20	3,400,000	3,400,000	
전기저장식온수기	15리터*1.5KW	대	5	1,050,000		
스텐관(물코-타입)	D50 등	M	248	2,394,868		
S-R 엘보	D50 등	EA	153	307,135		
S-R 티	D50 등	EA	38	224,104		
S-R 소켓	D32 등	EA	31	80,621		
S-R 레듀샤	D50 등	EA	14	76,200		
P-T 니블	D50 등	EA	9	35,690		
C-M 아답터	D50 등	EA	34	182,188		
C-M 유니온	D50 등	EA	18	251,670		
절연행가	D50 등	개소	129	249,566		
바램밸브	D32	EA	1	75,000		
볼밸브	D50 등	EA	16	144,460		
체크밸브(청동)	D50	EA	1	21,650		
관보온(포리바테이프)	D50*25T 등	M	248	1,192,040		
수전엘보	D15 등	EA	51	173,330		
앵글	65*65*6T	KG	40	40,000		
잡자재비	자재비의2%	식	1	155,975		
공구손료	인건비의3%	식	1	90,450		
배관공		인	19	2,470,000		
기계설치공		인	20	2,400,000		
보온공		인	7	840,000		
보통인부		인	9	765,000		
목욕탕 입상배관		식	1	5,000,000	5,000,000	
[소 계]				**21,619,947**	**8,400,000**	**0**
2. 오배수관 설치공사						
전기방열기	벽걸이형(1.5KW)	개	4	72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배기휀	천정형	개	5	125,000		
후렉시블	D100	m	40	60,000		
P.V.C 파이프(VG2)	D100 등	m	244	2,946,028		
P.V.C 엘보	D100 등	EA	81	101,868		
P.V.C YT	D100*100 등	EA	54	104,640		
P.V.C 엘보(45도)	D100 등	EA	71	102,047		
P.V.C 소켓	D100 등	EA	34	43,400		
P.V.C 소제구	D100 등	EA	24	33,936		
P.V.C P-트랩	D50 등	EA	16	66,176		
일반행가	D100 등	개소	164	393,556		
U-BOLT/NUT	D100 등	EA	12	6,600		
양변기스리브	D100	EA	8	20,240		
소변기스리브	D75	EA	4	7,800		
바닥스리브	D100	EA	4	10,120		
세면기스리브	D50	EA	4	6,760		
P.V.C 본드	1kg	통	10	60,000		
잡자재비	자재비의2%	식	1	49,576		
공구손료	인건비의3%	식	1	101,700		
배관공		인	11	1,430,000		
기계설치공		인	1	120,000		
보통인부		인	11	880,000		
철거비		식	1	900,000		
[소 계]				**8,289,447**	**0**	**0**
3. 위생기구 설치공사						
양변기	VC-1210	EA	8	1,160,000		
중형소변기	VU-320	EA	4	1,000,000		
각형세면기		EA	4	560,000		
휴지걸이	스텐레스	EA	8	104,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수건걸이	스텐레스	EA	4	52,000		
비누다이	스텐레스	EA	4	36,000		
화장거울	650*450	EA	4	92,000		
잡자재비	자재비의3%	식	1	47,920		
공구손료	인건비의3%	식	1	25,200		
위생공		인	4	520,000		
보통인부		인	4	320,000		
[소 계]				**3,917,120**	**0**	**0**
Ⅲ. 전기공사						
내부 전기공사	평당 단가	평	30	6,255,000		
엘리베이터 연결공사		식	1	6,500,000		
[소 계]				**12,755,000**		
[직접공사비 합계]				**435,751,664**	**151,903,450**	**36,588,250**
설계비	※ 과세제외 안분비율 원고:151,903,450/435,751,664 피고:36,588,250/435,751,664			3,000,000	1,045,802	251,897
감리비				2,000,000	697,201	167,932
기타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				67,248,336	23,442,834	5,646,562
[합 계]				**72,248,336**	**25,185,837**	**6,066,391**
[총 공 사 비]				**508,000,000**	**177,089,287**	**42,654,64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별지2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3.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제16조(증축 등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
2. 제1호에 따른 관련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해당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그 밖에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가액

■ 건축법(2012. 1. 17. 법률 제11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끝.